

가구 단위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의 자선적 기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완재(complement) vs. 대체재(substitute) 검증*

강 철 희** · 편 창 훈*** · 오 장 용****

요약

본 연구는 가구단위의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관계의 분석을 통해 가구단위 기부행동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이해의 확장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4년간의 가구 단위 기부행동을 패널토빗(Panel Tobit)의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결과, 가구단위의 기부규모 및 기부노력의 측면 모두에서 종교적 기부는 자선적 기부와 대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적 기부가 증가할 때 자선적 기부는 감소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부조적 기부의 경우, 기부규모에 있어서만 자선적 기부와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부조적 기부의 규모가 증가할 때 자선적 기부의 규모도 증가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 본 연구는 제2저자인 편창훈의 석사졸업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되었음.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114).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chulheekang@yonsei.ac.kr)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pyun4933@gmail.com)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박사과정(jyoh7255@naver.com)

타났다. 한편 가구단위의 자선적 기부에 대해 가구주 교육수준, 자가주택 보유여부, 가구소득, 기타지출 등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구단위 기부행동에 대한 지식의 확장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가구단위에서의 다양한 기부행동 간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가구단위 기부행동, 자선적 기부, 종교적 기부, 상호부조적 기부, 보완적 관계, 대체적 관계

1. 서론

2014년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복지예산은 전체정부예산의 12.0% 수준을 넘었다¹⁾.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복지의 확대와 함께 이런 흐름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복지국가로의 여정 속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논쟁과 무관하게 전개되는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민간복지자원의 확대이다. 민간복지자원은 ‘사회적 욕구 충족, 사회적 위험 대비,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유·무형의 서비스와 물질적 요소로서 개인 및 기업 등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으로부터 단체·시설·기관 그리고 시장, 기업 등이 제공하는 기부, 자원봉사, 기업의 사회공헌, 사적이전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며, 현금 또는 현물형태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 민간복지자원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 공급을 보다 다각화하는데 용이하다는 점, 공공부문 서비스 공급의 제한성을 보완 및 보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민간복지자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다(강철희·정기원·황기순, 2001). 민간복지자원이 지니는 이러한 용이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민간복지자원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민간복지자원의 규모를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개인 기부의 경우 약 4.4조 원 정도의 규모이고, 자원봉사의 경

1)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의 보건복지부 예산현황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보건복지부의 예산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최소 6.2%에서 최대 38.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에는 정부예산대비 10%의 비중이 보건복지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 최소한의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주희·강철희·박태근, 2014). 즉 법인기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시민 개개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투입되는 규모가 약 5.7조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1년 기준에서 정부 보건복지예산의 약 1/6 규모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양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시민의 나눔 활성화 역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서 정부는 ‘나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도화 시켜나가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 운영을 감독하는 공익신탁법²⁾의 실행, 나눔기본법을 통한 기부연금의 도입³⁾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기부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서구에 비해서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하나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노력은 다양한 방식의 기부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간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노력들에 비해 관련 현상에 대한 연구의 진행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즉 기부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조선주·박태규, 2007; 김주원·김용준, 2008; 이수애·이성태, 2009; 아름다운재단, 2012; 강철희·김계정·허영혜, 2012; 강철희·박태근, 2014),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부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부행동을 포괄해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더욱 주목해 봐야 하는 제한점이라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해외에서는 기부행동에 있어서 자선적 기부와 더불어 종교적 기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성으로 여겨져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는 기부를 자선적 기부(secular giving)로 한정(김주원·김용준, 2008; 이수애·이성태, 2009; 조선주·박태규, 2007)하여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종교적 기부에 대한 이해는 미천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경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나눔, 즉 상호부조 형태의 기부가 여전히 존재하

2)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3월 19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운영, 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3) 기부연금제도가 규정된 나눔기본법은 현재 국회에 안정행정위원회 계류 중이다.

는데, 이러한 상호부조적 행동에 대한 심화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경조사비로 대표되는 상호부조적 기부의 경우,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별개로 상호호혜성이란 특성 때문에 기부에 포함되어 논의되지 못하여 왔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상호부조적 나눔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강철희 · 김계정 · 허영혜, 2012; Cnaan, et al., 2014).

다음으로 서양에서는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와 관련해서 그 관계가 “보완적일 수 있다” 혹은 “대체적일 수 있다” 등의 시각에서 기부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된 활발히 연구가 진행(Hodgkinson, 1990; Regnerus, Mark, and Christian, 2005; James, Russell., and Deanna. 2007; Hill and Vaidyanathan, 2011)되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종교적 기부, 상호부조적 기부처럼 현실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다양한 형태에서 행해지는 행동과 자선적 기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의 확장을 저해하는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해외에서는 가구단위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Garner and Wagner, 1991; Jones and Posnett, 1991; Yen, 2002)과는 달리,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분석단위를 개인(individual)에 한정하여 연구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가구단위 기부행동에 대한 분석자료의 제한점⁴⁾ 그리고 기부행동을 개인의 의지와 행동에 기반한 현상으로부터 해석하는 제한점과 관련된 것이라 해석된다. 가구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가족 구성원들이 소득과 지출을 조정하고 공유하는 장(場)으로 국가가 한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에 맞춰 집행하듯이 각 가구 또한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면서 경제활동을 행해 나가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기부행동에 있어서 가구주 및 가구원의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단위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종교적 기부와 상호부조적 기부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개인단위보다 가구단위에서 그러한 기부행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⁵⁾을 고려해 본다면 이에 대한 기존의 개인단위에서의 기부행동 연구는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4) 미국의 경우,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의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서 가구단위의 기부행동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5) 종교적 기부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족구성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의 소득을 나누어 지출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며, 상호부조적 기부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향약, 두레, 계, 품앗이 등이 가구단위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제한점을 극복하는 방식의 연구를 실행하였다. 즉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에서의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와의 관계가 선택적인 것인지 즉 대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결합적인 것인지 즉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를 갖는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단위에서 구축된 횡단분석 자료만을 활용하였던 이전의 연구(강철희 · 김계정 · 허영혜, 2012)를 넘어, 본 연구는 분석의 단위를 가구로 확장시킬 수 있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와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구축한 재정패널자료⁶⁾를 활용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패널토빗분석(Panel Tobi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계효과분석을 통해 자선적 기부에 대한 종교적 기부와 상호부조적 기부의 영향력 및 기타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가구단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기부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지식의 구축에 기여해 보고자 하였다.

2. 기부의 형태와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정리

1) 다양한 형태의 기부

기부의 구성을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해외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기부 형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강철희 · 김계정 · 허영혜(2012)는 각 사회의 전통과 속성에 따라 그 구성이 더 세분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 기부(religious giving), 자선적 기부(secular giving)와 더불어 상호부조적 기부(Mutual-aid Giving)의 형태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한다.

기부는 사전적으로는 ‘내가 아닌 타인, 공동체, 혹은 공공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내놓음’⁷⁾이라 정의된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기부는 종교적인 것으로부

6) 재정패널은 매년 가구단위의 종교적 기부, 자선적 기부, 상호부조적 기부(경조사비)를 나누어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기여행동이 기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Robbins(2004)는 “History of Philanthropy”에서 서구의 자선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기부행동의 기원이 되는 자선(charity)은 종교적인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종교적인 교리로 구체화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자선적 기부라 불리는 말 역시 종교적인 기반에서 파생되어진 것으로 중세 이후에 자본을 구축하게 되는 상인들의 부상 그리고 이들의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여행동을 기반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종교적 기부행동을 벗어난 세속을 위한 기여행동, 즉 세속적(secular) 자선활동이라는 새로운 형태 역시 종교적 기부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철희·김계정·허영혜, 2012).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의 범주 중 종교적 기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경향이 있으나, 서구에서는 종교적 기부가 기부의 원천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기부가 사회에서 여전히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선적 기부와 함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기부, 즉 종교적 기부를 기부의 핵심 구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종교적 기부를 자선적 기부와 구별하여 파악하는 방식과 더불어 총 기부로 결합하여 살펴보는 방식의 연구(강철희·허영혜·최영훈, 2013; Eckel & Grossman, 2004; Brown & Ferris, 2004; Brown & Ferris, 2007; Skarmas & Shabbir, 2011; Wang & Graddy, 2008; Wilhelm et al., 2008)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구에서 근대화 과정 이후 종교적인 목적과는 무관하게 이웃과 공동체 및 사회를 위한 기여행동, 즉 자선적 기부 혹은 세속적 기부(secular giving)가 종교를 갖는 이들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는 시민 모두에게까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자선적 기부는 다양한 기부영역에서 종교적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 대가성 없이 행해지는 기부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자선적 기부가 기부 개념을 대표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특히 더 자선적 기부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지는 경향성이 크다(김주원, 2008; 이수애, 2009; 조선주, 2007). 여하튼 종교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자선’이 종교와 거리를 두게 되면서 ‘세속적 원인을 위한 기여’로 파생되어지고, 이제는 종교와는 무관한 또 하나의 실체로 변환되어 세속적 기부가 기부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부조적 기부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의 공동체적 문화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한 보호가 미약했던 우리 사회에서

개인과 가족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방식에 의존하면서 정서적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왔다고 할 수 있다(강철희·김계정·허영혜, 2012; Cnaan et al., 2014). 공동체의식 및 유대관계에서 비롯된 상호부조 활동으로부터 특수한 형태의 것이 파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호부조적 기부라 할 수 있다. 한상복(1980)은 우리나라에서 상호부조적 원조행위는 원래 어려운 생애 사건(life event)에 직면했을 때 직면한 문제들을 이웃과 친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노동력이나 현물의 기여를 통해 극복하는 형태였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 현재에는 노동력 부조와 현물부조는 현저히 줄고 현금 부조가 주된 상호부조적 원조행위의 주요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김혜연·김미성(2001)은 대표적인 상호부조적 기부인 ‘경조비’가 한국사회에서 서구화된 사고방식과 함께 전통성을 유지하려는 가치, 태도, 의식구조의 혼돈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강철희·김계정·허영혜(2012)는 현대적인 국가의 출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상호부조적 기부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상호호혜성(reciprocity)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부조적 기부의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을 배제하는 자기희생적 행동 즉 기부의 전통적인 개념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현재까지 기부의 한 측면으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상호부조적 기부가 항상 상호호혜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여일 수도 있다는 점(Cnaan et al., 2014)에서 기부의 한 형태로 간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Schervish(1993)의 논의처럼 공동체 내의 다양한 형태의 원조 및 기여를 모두 기부의 행동으로 포괄하며 사회적 실재를 반영하는 것은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 및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부조적 기부를 기부의 또 하나의 형태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다양한 기부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논의 및 연구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가 자선적 기부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경제학의 다양한 모형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공공재 모형(public good model)과 소비모형(consumption model)은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대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를

이루는지 혹은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를 이루는지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하는 기본 틀로 기능할 수 있다. 공공재 모형은 다양한 기부행동 간의 대체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자들(Duncan, 1999; Handy and Katz, 2008)에 따르면, 이 모형 내에서 개인은 순수한 이타주의자(pure altruists)이며 기부의 목적은 공공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두고 있으므로, 기부를 실천하는 개인은 공공재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자신에게 돌아올 편익과 관계없이 공공재의 공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기부 간 대체적 관계가 성립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공재모형에서의 설정과는 달리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한 설명은 소비 모형(consumption model)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소비 모형에서는 개인은 순수하지 않은 이타주의자(impure altruists)로서 기부는 'warm glow' 등과 같이 개인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편익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설명한다(Andreoni, 1990). 다양한 기부행동은 개인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동시에 결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기부행동들이 보완적 관계로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Handy and Katz, 2008). 예를 들어 종교적 기부를 통해서서는 신과의 교감이나 불확실함 속에 위로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자선적 기부를 통해서서는 앞서 언급한 'warm glow'나 타인의 인정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상호부조적 기부를 통해서서는 네트워크, 유대관계, 공동체 의식 등의 다양한 편익을 얻을 수 있기에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보완적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철희·김계정·허영혜(2012)가 아름다운 재단에서 실시한 기빙코리아 2010의 자료를 통해 개인의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교적 기부규모 및 종교적 기부노력 모두 자선적 기부규모 및 자선적 기부노력과 각기 보완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는 국내와 달리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Hodgkinson, 1990; Regnerus, Mark, and Christian, 2005; James, Russell., and Deanna. 2007; Hill and Vaidyanathan, 2011). 구체적으로 Hill & Vaidyanathan(2011)이 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단위에서 자선적 기부와 종교적 기부가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분석 결과 종교적 기부를 많이 하는 가구가 종교적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하면서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가 보완적 관계를 가짐을 보고하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소비모형의 논리와 같이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는 보완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강철희·김계정·허영혜(2012)가 개인 단위에서의 분석에서 두 변수 간 기부노력 측면에서만 보완적 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를 제외하고는 국내 및 해외에서 개인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에서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에 관해 연구한 논문은 전무한 상황이다. 즉 이러한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구축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3) 자선적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단위의 영향요인

가구단위의 자선적 기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접근은 주로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주로 이뤄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구주특성⁸⁾과 가구특성⁹⁾, 가구의 경제지표 등이 변수로 반영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Garner and Wagner, 1991; Jones and Posnett, 1991; Jones and Marriott, 1994 Yen, 2002).

가구주와 관련해서는 가구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인종, 직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크고,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가구원수, 거주지역, 자가주택 보유여부와 더불어 가구의 경제적 지표인 가구수입 등이 주요한 변수로 투입되어지는 경향이 크다. 연구를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Jones와 Posnett(1991)은 영국의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토빗분석을 활용하여 가구의 기부행동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가구의 자산, 가구주의 연령, 결혼여부, 성별, 자가주택 보유여부, 자녀유무, 거주지역 중 가구의 자산, 자가주택 보유여부가 가구의 기부행동과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다. Family Expenditure Survey의 1990년 자료를

8) 가구를 대표하는 인원의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9) 가족구성원수, 자녀의 수, 자가주택 보유여부, 거주지역 등

활용한 또 다른 연구(Jones and Posnett, 1991)에서는 총 지출,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등이 가구의 기부행동과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지님을 보고한다. Yen(2002)의 경우 Consumer Expenditure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자선적 기부와 종교적 기부 등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자선적 기부에 정적인 방향에서의 영향을 지닌다는 것을 보고한다. 그 외에도 가구수입, 가구의 자산, 경제활동인구수, 자가주택 소유여부, 거주지역, 가구주의 인종 등의 변수로 투입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의 기부행동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이는 가구단위의 자료수집이 용의치 않은 점 그리고 기부행동에 대한 연구가 개인 수준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가구단위 기부행동에 대한 연구는 강철희·박태근(2014)이 재정패널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가구단위 기부행동을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유일한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자선적 기부, 종교적 기부, 총 기부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며, 가구 특성 중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 수 및 경제활동인원수가 종교적 기부와 총기부에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고, 가구총수입은 자선적 기부, 종교적 기부, 총 기부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 결과는 전반적으로 가구주특성과 가구특성 및 가구의 경제지표 등도 고려하면서 가구의 자선적 기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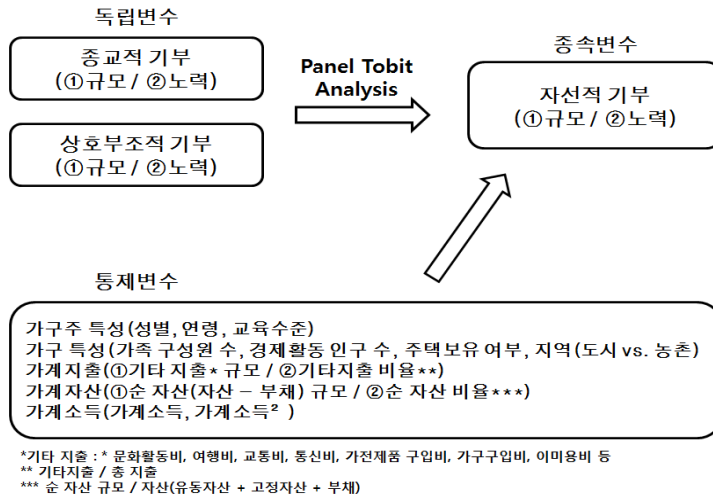
1) 연구모형

위에서 논의된 문헌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가구 수준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기부, 구체적으로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가 자선적 기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종교적 기부와 상호부조적 기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가구단위 기부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되어 온 가구주¹⁰⁾요인, 가구요인 그

10) 재정패널 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주란 경제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현재 가구소득의 상당부분을

리고 가구의 재정지표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부와 관련해서 절대규모와 함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규모까지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가구단위 기부행동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본 연구의 모형에 포괄된 변수 및 측정방법은 아래 [표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1] 핵심변수 및 변수의 측정방법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 변수	자선적 기부	정당,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 기타 분야에 기부 - 규모 = 가구 연간 기부금 총액 - 노력 = 가구 연간 기부금 총액 / 가구소득

차지하거나 가구를 경제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뜻한다. 가구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연장자인 가구원을 가구주로 간주하고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남편을 가구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독립 변수	종교적 기부		종교분야에 기부(현금, 보시 등 포함) - 규모 = 가구 연간 종교분야 기부금 총액 - 노력 = 가구 연간 종교분야 기부금 총액 / 가구소득
	상호부조적 기부		경조사비 지출 - 규모 = 연간 경조사비 지출 총 금액 - 노력 = 연간 경조사비 지출 총 금액 / 가구소득
통계 변수	가구주특 성	성별(d)	가구주 성별 (남=0, 여=1)
		연령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 특성	가족 구성원수	가족구성원수 = 가구구성원 수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 가구 내 경제활동 인원 수
		자가주택 보유여부(d)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여부 (미보유(전세, 월세, 기타) = 0, 보유 = 1)
		지역(d)	가구의 거주지역 (농촌(군지역) = 0, 도시(시지역) = 1)
	가구 경제 지표	기타지출	문화활동비, 여행비, 교통비, 통신비, 가전제품 구입비, 가구구입비, 이미용비 - 기타지출 규모: 기타지출 총 금액 - 기타지출 비율: 기타지출 규모 / 총 지출 규모
		가구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가구원 조사의 소득자료 활용)
		순 자산	- 순 자산 규모 = 자산규모 (고정자산 + 금융자산) - 부채규모 - 순 자산 비율 = 순 자산 규모 / 자산 + 부채

(d): Dummy variable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선적 기부로서 자선적 기부규모(philanthropic amount)와 자선적 기부노력(philanthropic effort)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자선적 기부규모는 가구설문에서 가구주가 응답한 내용으로 연도별로 정당,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 기타분야에 기부한 금액의 총금액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기부규모는 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기부금액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인 기부노력, 즉 기부의 상대적인 값도 측정해서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이는 소득을 반영한 기부의 상대적 비중을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가구의 기부행동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함이다.

독립변수는 종교적 기부와 상호부조적 기부이다. 이 역시도 절대적인 값에 대한 측정과 함께 상대적인 값을 측정하여 상응하는 분석에 활용한다. 종교적 기부규모는 연도

별로 가구가 종교분야에 기부한 총액¹¹⁾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절대규모와 함께 소득 대비 규모(기부노력)도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상호부조적 기부는 연도별로 가구가 지출한 경조사비로 측정되었으며 가구조사에서 포함되어 금액이 측정되어졌다. 상호부조적 기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부규모와 기부노력으로 세분화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선행연구를 검토에 기초해서 통제변수로는 가구의 중심이 되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특성’ 그리고 ‘가구의 경제적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가구의 자선적 기부에 가구소득이 지닐 수 있는 U-shape 효과(Cloutfelter and Steuerle, 1981; Hodgkinson and Weitzman, 1986; Hodgkinson et al., 1992)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의 제곱 변수도 설정하여 분석한다. 가구소득과 가구소득의 제곱값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가구소득의 값에서 평균값을 뺀 편차점수를 활용하는 중심화(mean-centering) 값(Cronbach, 1987)을 사용한다.

3)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재정패널은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¹²⁾와 가구원¹³⁾을 대상으로 조사된 패널 자료이다. 재정패널 조사주기는 1년이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식(face-to-face)¹⁴⁾ 방식이다. 분석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 즉 1~5차년도 재정패널 자료 중 2~5차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1차년도 자료의 경우, 본 연구에서 변수로 포함시키고 있는 기타 지출부분의 변수¹⁵⁾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11) 종교기관에 내는 현금이나 보시를 포함하여 산출(재정패널 가이드북)

12)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하며 그 구성원을 가구원으로 함.

13)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함께 생활한 가족은 가구원으로 인정, 6개월 이상 비동거를 했더라도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 및 미혼의 대학생은 가구원으로 인정. 단,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나 기러기아빠는 가구원에서 제외.

14) 조사대상을 조사원이 직접면접을 해서 구두에 의한 질문에 응답자가 구두로 답하는 방식. 조사원이 그 응답을 기입하는 타계식에 의한 방법. 사실에 관한 것과 의견이나 태도에 관한 것 모두를 충분히 소화 가능하며, 장점으로서는 대상자 본인에게서 꼭 들을 수 있고 응답자의 오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조사원의 개인차에 의한 편견과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있다(사회복지학사전, 2013).

15) 교통비, 가전제품 구입비, 가구구입비, 의류잡화 구입비, 이비용비.

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 조사시점인 2012년도의 원표본 가구는 총 5,410가구이다. 2차부터 5차까지 모두 응답한 가구 수는 4,419가구로 전체 가구의 81.68%이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 패널토빗(Panel Tobit)방법을 활용한다. 패널(Panel)분석을 활용한 이유는 패널분석이 횡단면 데이터 분석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인식, 2012). 첫째, 횡단면 자료 분석은 변수들 간의 정적(static)인 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패널 자료 분석에서는 동적(dynamic)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패널 자료 분석은 횡단면 또는 시계열 자료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이들 자료분석에 비해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선적 기부의 경우 0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이를 최소자승법(OLS)에 기초한 회귀분석으로 분석을 사용할 경우 선택 편이의 문제(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토빗분석을 활용한다(Hill and Vaidyanathan, 2011).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한 분석방식인 패널토빗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y^* = \alpha + \beta x + u_i + e, \quad i = 1, 2, \dots, n, \quad t = 1, 2, \dots, T_i$$

$$y_{it} = y^*, \quad \text{if } y^* > 0$$

$$y_{it} = 0, \quad \text{if } y^* \leq 0$$

본 분석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인 기부규모와 기부노력의 값이 좌측절단(left-censored)되어 “0”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 “0”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최대우도법의 방식을 사용하여 “0”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Jeremy, 2006; 민인식, 2012). 한편 패널토빗모형은 비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변수의 계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강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계효과를 계산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 선형관계를 가질 때 발생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4. 분석 결과

1) 기술적 분석의 결과

본 연구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2012년을 기준으로 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가 3,831가구(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910가구(19.2%)이다.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경우, 최종 교육이 고등학교인 경우가 1,566가구(3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교인 경우는 1,358가구(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가구)	비율(%)
가구주 특성	성별	남성	3,831	80.8
		여성	910	19.2
	교육 수준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217	4.6
		초등학교	567	12.0
		중학교	466	9.8
		고등학교	1,566	33.0
		전문대학교	363	7.7
		대학교	1,358	28.6
		대학원 석사	171	3.6
		대학원 박사	33	0.7

변수		구분	빈도(가구)	비율(%)
가구 특성	가족 구성원 수	1	726	15.3
		2	1,107	23.3
		3	1,022	21.6
		4	1,399	29.5
		5	390	8.2
		6	73	1.5
		7	21	0.4
		8	4	0.1
			평균 : 3.0	표준편차 : 1.3
가구 경제 지표	가구 소득	1천만 원 미만	947	19.8
		1천만 원 ~ 3천만 원	1,327	27.7
		3천만 원 ~ 5천만 원	1,150	24.0
		5천만 원 ~ 7천만 원	583	12.2
		7천만 원 ~ 9천만 원	329	6.9
		9천만 원 이상	448	9.4
			평균 : 3,518만 원	표준편차 : 3,571

* 2012년 기준 (N = 4,784)

가구의 특성에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구성원수의 경우 4인가구가 1,399가구(2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인가구는 1,107가구(23.3%), 3인가구는 1,022가구(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값을 기초로 가구의 소득수준¹⁶⁾을 살펴보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1,327가구(27.7%)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1,150가구(24.0%)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로 설정한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의 규모와 노력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16) 가구소득 변수를 구간으로 나누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음.

[표 3]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종교적 기부규모	빈도(가구)	평균(만 원)	표준편차	최소값(만 원)	최대값(만 원)
2009	5,095	46.96	170.49	0	4,000
2010	4,884	49.13	183.63	0	4,900
2011	4,842	46.71	162.98	0	4,100
2012	4,784	46.90	159.51	0	2,100
상호부조적 기부규모	빈도(가구)	평균(만 원)	표준편차	최소값(만 원)	최대값(만 원)
2009	4,497	85.47	97.84	3	1,200
2010	4,289	87.05	100.44	2	2,000
2011	4,189	88.29	94.70	3	1,002
2012	4,152	90.23	101.11	1	2,000
종교적 기부노력	빈도(가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만 원)	최대값(만 원)
2009	4,760	2.49	22.91	0	1,200
2010	4,653	2.28	13.66	0	495
2011	4,576	2.56	17.66	0	500
2012	4,528	2.05	12.79	0	360
상호부조적 기부노력	빈도(가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만 원)	최대값(만 원)
2009	4,330	5.37	17.23	.09	600
2010	4,188	5.62	20.57	.03	600
2011	4,091	5.03	19.09	.09	750
2012	4,044	4.39	12.96	.05	500

201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가구당 종교적 기부로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46만 9천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적 기부의 비중은 가구소득의 2.0%이었다. 한 가구당 상호부조적 기부로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90만 2천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부조적 기부의 비중은 평균 4.39%이었다. 상호부조적 기부를 하지 않는 가구는 2012년 기준 632가구로 전체의 13.2%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상호부조적 기부가 전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선적 기부규모와 자선적 기부노력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선적 기부규모는 1가구당 평균 7만 2천 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기부금으로 보고된 규모는 3천만 원이었다. 자선적 기부규모의 경우에는 전체가구 중 상당수가 '0'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다소 과소추정 될 수 있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로 살펴볼 때, 미약하나마 기부를 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가구의 자선적 기부규모와 각 연도별 기술통계값은 [표 4]와 같다.

[표 4]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변수		평균(만 원)	표준편차	최소값(만 원)	최대값(만 원)
자선적 기부규모(만 원)		7.232905	53.48856	0	3000
자선적 기부(가구)		2009	2010	2011	2012
기부를 하지 않은 가구	빈도(가구)	4,574	4,300	4,284	4,210
	%	89.77%	88.04%	88.48%	88.00%
기부를 한 가구	빈도(가구)	521	584	558	574
	%	10.23%	11.96%	11.52%	12.00%

자선적 기부노력을 보면, 소득대비 기부평균규모가 소득대비 1.5%에서 3.3%로 미약하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연도별 소득대비 기부노력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은 [표 5]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5] 자선적 기부노력 기술통계분석

년도	빈도(가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09	4,760	.15	1.13	0	34.23
2010	4,653	.29	6.64	0	400
2011	4,576	.21	2.68	0	166.67
2012	4,528	.33	11.44	0	766.67

2)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 검증

(1) 기부규모 측면

기부규모의 측면에서 가구 수준에서의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에 대한 패널토빗분석(Panel Tobit analysis)의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자선적 기부규모에 대한 패널토빗 분석

자선적 기부규모		Coef.	Std. Err	z statistic	p> z
종교적 기부규모		-0.319***	0.000	-8.22	0.000
상호부조적 기부규모		0.356***	0.001	5.87	0.000
가구주 특성	성별(ref. 남)	2.811	0.282	0.10	0.920
	연령	-2.011*	0.008	-2.45	0.014
	교육수준	96.195***	0.074	12.94	0.000
가구 특성	가족구성원수	19.490**	0.075	2.59	0.010
	경제활동인구수	-2.040	0.114	-0.18	0.858
	주택보유 (ref. 자가주택 미보유)	60.364***	0.168	3.60	0.000
	지역(ref. 농촌)	-50.086	0.310	-1.62	0.106
기타지출 규모		0.051***	0.000	4.29	0.000
순자산(자산-부채) 규모		0.000	0.000	1.02	0.306
가구소득		0.031***	0.000	11.21	0.000
가구소득 ²		-0.000***	0.000	-7.26	0.000
상수항		-1086.962***	0.781	-13.92	0.000

* p<0.05; ** p<0.01; *** p<0.001

먼저, 독립변수인 가구의 종교적 기부규모는 자선적 기부규모에 있어서 부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에서 종교적 기부규모와 자선적 기부규모는 대체재적 관계(substitute relationship)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ill과 Vaidyanathan(2011)의 연구에서 가구의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 그리고 종교적 기부노력으로 측정된 종교성이 자선적 기부에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강철희·김계정·허영혜, 2012; 강철희 외, 2014; Bekkers & Schuyt, 2008; Vaidyanathan et al., 2011)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이런 결과는 측정 방식의 차이 및 분석 단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종교적 기부가 담고 있는 포괄성의 기대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즉 종교를 갖는 이들의 경우, 종교적 기부는 종교적인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인 구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현상일 수 있기에 그 관계에서 대체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가구의 상호부조적 기부 역시 자선적 기부규모에 대해서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상호부조적 기부규모와 자선적 기부규모는 보완재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괄성의 기대를 담은 종교적 기부와는 다르게 사회적 연결망 속 관계상의 암묵적 의무와 상호호혜성의 인식 등이 반영되어 행해지는 상호부조적 기부(Cnaan et al., 2014)는 자선적 기부와 그 맥락이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기에 기부주체의 자선적 기부에 대한 의지 여부에 따라 결합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자선적 기부규모에 대한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앞선 선행연구들(Garner & Wagner, 1991; Jones & Posnett, 1991; Jones & Marriott, 1994; Yen, 2002)과 다소 다른 결과 및 유사한 결과를 동시에 보인다. 가구주 특성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금액의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됨이 확인된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 구성원수가 많을수록, 자가 주택보유한 가구가 주택을 미보유한 가구보다 기부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인다. 가구의 재정지표에서는 가구의 기타지출의 규모와 가구소득은 정적인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 제곱과 관계에서도 부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유로운 수입을 의미할 수 있는 기타지출의 규모가 큰 가구에서 자선적 기부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많은 가구가 자선적 기부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 가구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기부규모 측면에서 그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 6]의 패널토빗분석의 추정결과는 비선형관계를 표현하는 모형이므로 계수를 통해 그 강도를 설명하는 데 제한점이 따른다. 이런 제한점을 극복하면서 각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계효과를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자선적 기부규모에 대한 한계효과 계산

자선적 기부규모		predict(ys) E(y*)	predict(e) E(y* y*)0)
종교적 기부규모		-0.033***	-0.054***
상호부조적 기부규모		0.037***	0.061***
가구주 특성	성별(ref. 남)	0.290	0.480
	연령	-0.207*	-0.343*
	교육수준	9.883***	16.414***

자선적 기부규모		predict(ys) E(y*)	predict(e) E(y* y* > 0)
가구 특성	가족구성원수	2.002**	3.326**
	경제활동인구수	-0.210	-0.348
	주택보유(ref. no 자가)	6.043***	10.211***
	지역(ref. 농촌)	-5.520	-8.747
기타지출 규모		0.005***	0.009***
순자산(자산-부채) 규모		0.000	0.000
가구소득		0.003***	0.005***
가구소득 ²		-0.000***	-0.000***

* p<0.05; ** p<0.01; *** p<0.001

한계효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민인식, 2012)한데, 첫 번째, $E(y^* | y^* > 0)$ 의 가정 하에서 한계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어떤 가구가 0보다 큰 기부규모를 가진 그룹에 속해있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한 한계효과이다. 두 번째는 $E(y^*)$ 의 가정 하에서 한계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E(y^*)$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E(y^* | y^* > 0)$ 과 $\Pr(y^* > 0)$ 을 곱해주어야 하는데, $\Pr(y^* > 0)$ 의 값은 항상 0과 1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E(y^*)$ 이 $E(y^* | y^* > 0)$ 보다 작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효과로 계산된 값에 100을 곱하여 그 값을 표시하였다.

$E(y^*)$ 의 가정하에 분석할 경우, 가구의 종교적 기부규모가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가구의 자선적 기부규모는 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상호부조적 기부의 경우, 기부규모가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가구의 자선적 기부규모도 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의 연령은 한 살 증가할 때마다 가구의 자선적 기부규모가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자선적 기부규모는 9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가족구성원수의 경우 1명 늘어날 때마다 가구의 자선적 기부규모는 2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자선적 기부규모가 60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출의 경우 지출이 1만 원 증가할 때 가구의 자선적 기부는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자선적 기부규모는 0.3% 증가하나 일정수준을 지나면 미약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부노력 측면

기부노력 측면에서 가구단위에서의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에 대한 패널토빗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자선적 기부노력에 대한 패널토빗 분석

자선적 기부노력		Coef.	Std, Err	z statistic	p> z
종교적 기부노력		-0.016***	0.004	-3.55	0.000
상호부조적 기부노력		0.001	0.002	0.57	0.566
가구주 특성	성별(ref. 남)	0.029	0.100	0.29	0.774
	연령	-0.006	0.003	-2.01	0.045
	교육수준	0.320***	0.026	12.09	0.000
가구 특성	가족구성원수	0.093***	0.028	3.37	0.001
	경제활동인구수	-0.012	0.042	-0.28	0.781
	주택보유 (ref. no 자가)	0.255***	0.060	4.26	0.000
	지역(ref. 농촌)	-0.143	0.111	-1.28	0.199
기타 지출 비율(기타 지출/총 지출)		0.601**	0.222	2.70	0.007
순자산 비율(순자산 / 자산+부채)		0.005	0.040	0.13	0.900
가구소득		0.000***	0.000	10.05	0.000
가구소득 ²		-0.000***	0.000	-6.46	0.000
상수항		-3.934***	0.298	-13.18	0.000

* p<0.05; ** p<0.01; *** p<0.001

먼저, 독립변수인 종교적 기부노력은 기부규모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적인 방향에서 자선적 기부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수준에서 종교적 기부노력과 자선적 기부노력은 대체적 관계(substitute relationship)를 갖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상호부조적 기부노력은 자선적 기부노력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부규모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가구주특성에 있어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선적 기부노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도 가족구성원수와 자가주택의 보유여부가 기부노력에 대해 정적인 방향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가구의 재정지표에서도 자선적 기부규모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기타지출의 비율과 가구소득은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고 가구소득 제곱변수는 부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기부노력의 측면에서도 기타지출의 비율이 높은 가구가 자선적 기부노력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은 가구가 자선적 기부노력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가구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자선적 기부노력이 미약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적 기부노력 모형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자선적 기부노력에 대한 한계효과 계산

자선적 기부노력		predict(ys) E(y*)	predict(e) E(y* y*)0)
종교적 기부노력		-0.001***	-0.003***
상호부조적 기부노력		0.000	0.000
가구주 특성	성별(ref. 남)	0.003	0.005
	연령	-0.001	-0.001
	교육수준	0.031***	0.053***
가구 특성	가족구성원수	0.009***	0.015***
	경제활동인구수	-0.001	-0.002
	주택보유(ref. no 자가)	0.024***	0.042***
	지역(ref. 농촌)	-0.014	-0.024
기타 지출 비율(기타 지출/총 지출)		0.057**	0.100**
순자산 비율(순자산 / 자산+부채)		0.000	0.001
가구소득		0.000***	0.000***
가구소득 ²		-0.000***	-0.000***

* p<0.05; ** p<0.01; *** p<0.001

E(y*)의 가정하에 분석할 경우, 가구의 종교적 기부노력이 1% 증가할 때 가구의 자선적 기부노력은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자선적 기부노력은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의 가족구성원수가 1명 늘어날 때 가구의 자선적 기부노력이 0.9% 정도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자선적 기부노력이 2.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출 대비 기타지출이 1%

증가할 때 가구의 자선적 기부노력은 5.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가구의 자선적 기부노력은 미약하게 증가하다가 일정수준이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미약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10]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10] 자선적 기부와 종교적 기부, 상호부조적 기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

구분		자선적 기부규모		자선적 기부노력	
		영향력 Coef.	한계효과 E(y*)	영향력 Coef.	한계효과 E(y*)
종교적 기부(①규모/②노력)		(-)**	-0.033***	(-)**	-0.001***
상호부조적 기부(①규모/②노력)		(+)**	0.037***		
가구주 특성	성별(ref. 남)				
	연령	(-)*	-0.207*		
	교육수준	(+)**	9.883***	(+)**	0.031***
가구 특성	가족구성원수	(+)**	2.002**	(+)**	0.009***
	경제활동인구수				
	주택보유 (ref. 자가주택 미보유)	(+)**	6.043***	(+)**	0.024***
	지역(ref. 농촌)				
기타지출(①규모/②비율)		(+)**	0.005***	(+)**	0.057**
순자산(자산-부채)(①규모/②비율)					
가구소득		(+)**	0.003***	(+)**	0.000***
가구소득 ²		(-)**	-0.000***	(-)**	-0.000***

* p<0.05; ** p<0.01; *** p<0.001

5. 결론 및 논의

가구단위에서의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 역시 개인단위에서의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만큼 흥미롭고 중요할 수 있다. 이는 기부규모 및 비중에 대한 전반적 선택이 개인수준보다는 가구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종교적 기부는 개인 단위에서 발현되기보다 가구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높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형태의 기부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가구수준에서 다양한 기부행동의

관계를 검증하는 노력은 현상에 대한 이해 제고 차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론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종교적 기부 및 자선적 기부와 더불어 공동체적 생활양식에 기반된 상호부조적 기부와 같은 독특한 기부양식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구단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는 지식의 확장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자선적 기부의 확산전략의 수립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사한 재정패널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분석단위를 개인에서 가구로 확장하고 가구의 다양한 기부행동과 그 관계를 가구의 주요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이 횡단면 분석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종속변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토빗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회귀 분석상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제한점을 보완하며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종속변수인 가구의 자선적 기부규모와 기부노력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가구의 자선적 기부규모와 기부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 내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민간자원의 역할이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종교적 기부와 상호부조적 기부의 경우 자선적 기부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횡단면 분석을 한계를 극복하여 패널토빗분석을 적용하였을 때, 가구의 종교적 기부규모 및 종교적 기부노력 모두는 자선적 기부규모 및 기부노력에 부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하였을 때의 선행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인데 향후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즉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가 대체재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제한점들, 예로 응답자의 인식 범위의 문제와 기부행동에 대한 측정방식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보다 정교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호부조적 기부의 경우에는 기부규모 측면에서만 자선적 기부와 보완재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적 관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종교적 기부와는 다르게 상호 다른 맥락에서

발생되는 각기 다른 효용에 의한 행동의 결과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향후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가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주 특성 중에서 교육수준,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원수와 주택의 보유여부, 그리고 가구의 경제지표에서는 기타 지출의 규모와 비율이 가구의 자선적 기부와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구소득의 경우 U-shape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자선적 기부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선적 기부는 종교적 기부와는 대체재적 관계를 갖고, 상호부조적 기부와는 보완재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종교적 기부와의 관계에서 자선적 기부는 대체재적인 속성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은 종교적 기부의 사회를 위한 기여 확대의 의무와 관련된 논의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향후 매우 중요한 사회적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아울러서 상호부조적 기부의 부담 속에서도 자선적 기부가 보완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자선적 기부는 제도적 지원 확충에 따라서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소지에 충분한 사회적 현상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즉 복지국가를 향한 논란의 과정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문제해결의 다양한 방식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선적 기부이고 이러한 자선적 기부는 경제 및 사회적 상황 그리고 제도적 여건에 따라서 그 발전의 정도가 확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활용에 있어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형에서 포괄하지 못한 변수의 영향력 등은 감안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자료의 속성으로 인해 패널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했다고는 볼 수 없기에, 통계적 해석에 있어서도 다소의 제한점을 가질 수는 있다. 셋째, 분석단위를 가구로 한정하는 과정에서 가구주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가구원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의 주제와 내용상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 결과가 지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충분히 다

뤄내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가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이후 수행되는 후속적 연구들을 위한 지식의 토대로 기능하여 다양한 분석단위의 다양한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가구단위 상의 다양한 기부형태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통해 관련된 시사점들이 정부의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강철희, 정기원, 황창순(2001). 사회복지 부문 민간복지재원 규모 파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4(4), 1-29.
- _____(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161-205.
- _____, 김계정, 허영혜(2012).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연구: 다양한 형태의 기부행동간 연관성분석. 사회복지정책, 39(1), 163-197.
- _____, 허영혜, 최영훈(2013).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4), 341-365
- _____, 박태근(2014) 가구재정 지표와 기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기부영역에 따른 비교. 사회복지정책, 41(3), 1-25.
- 김주원, 김용준(2008). 자선단체 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부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37(3), 629-658.
- 김혜연, 김미성(2001). 경조비에 대한 인식 및 지출변화 - IMF 경제위기 이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 65-80.
- 아름다운재단(2012). Giving Korea 2012, 제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이수애, 이성태(2009).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69-95.
- 조주희, 강철희, 박태근(2014).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3-121.
- 조선주, 박태규(2007). 정부보조금이 민간 기부금을 구축하는가. 공공경제, 12(2), 65-88.
- 한상복(1980).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사회와문화, 3.
- Andreoni, J.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 a theory of warm-glow giving. The economic journal, 100(401), 464-477.
- Bekkers, R., & Wiepking, P. (2006). To give or not to give, that is the question : How methodology is destiny in Dutch giving dat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3), 533-540.
- Brown, E., & Ferris, J. (2004, July).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Toronto, Canada.
- Brown, E., & Ferris, J. M. (2007).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 An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85-99.

- Cnaan, R. A., Kang, C. H., Kim, K. S., & Lee, L. H. (2014). Informal social networks in Korea: Covering the cost of major life events. *The Social Science Journal*, *51*(4), 627-637.
- Duncan, B. (1999). Model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2), 213-242.
- Eckel, C. C., & Grossman, P. J. (2004). Giving to secular causes by the religious and non religious : An experimental test of the responsiveness of giving to subsidi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2), 271-289.
- Garner, T. I., & Wagner, J. (1991). Economic dimensions of household gift giv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8-379.
- Handy, F., & Katz, E. (2008). Donating behavior : if time is money, which to give? A preliminary analysis . *Journal of Economic Studies*, *35*(4), 323-332.
- Hill, J. P. ,& Vaidyanathan, B. (2011). Substitution or symbiosis?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and secular giving. *Social Forces*, *90*(1), 157-180.
- Hodgkinson, V. A. (1990). The future of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The inseparable link between religious community and individual generosity. *Faith and philanthropy in America: Exploring the role of religion in America's voluntary sector*, 284-312.
- James III, Russell N., and Deanna L. Sharpe. (2007). "The 'Sect Effect' in Charitable Giving: Distinctive Realities of Exclusively Religious Charitable Giver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6*(4): 697-726.
- Jones, A., & Marriott, R. (1994). Determinants of the level and methods of charitable giving in the 1990 Family Expenditure Survey. *Applied Economics Letters*, *1*(11), 200-203.
- Jones, A., & Posnett, J. (1991). Charitable donations by UK households : evidence from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Applied Economics*, *23*(2), 343-351.
- Putnam, R. (2001). Social capital :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41-51.
- Regnerus, Mark D., and Christian Smith. 2005. "Selection Effects in Studies of Religious Influenc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7*(1), 23-50
- Robbins, K. 2004. *History of Philanthropy. Philanthropy in America: A Comprehensive Historical Encyclopedia* Volume 1.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Inc.
- Rooney, P. M., Steinberg, K. S., & Schervish, P. G. (2001).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giving surveys: Indiana as a test cas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3), 551-568.
- Schervish, P. G. (1993).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independent sector :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giving and volunteering. *Voluntas :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 Nonprofit Organizations, *4*(2), 223-232.
- Skarmeas, D., & Shabbir, H. A. (2011). Relationship quality and giving behaviour in the UK fundraising sector : Exploring the antecedent roles of religiosity and self-construal.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45*(5), 720-738.
- VanSlyke, D. M., & Brooks, A. C. (2005). Why do people give? New evidence and strategies form on profit manager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3), 199-222.
- Wang, L., & Graddy, E. (2008). Social capital,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Voluntas :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9*(1), 23-42.
- Wiepking, P. (2004). Do the poor donate more? The effect of income on philanthropic donations. In 33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Associations and Voluntary Action, LosAngeles, CA.
- Wilhelm, M. O., Brown, E., Rooney, P. M., & Steinberg, R. (2008). The intergeneration altransm is sion of generos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10), 2146-2156.
- Wuthnow, R., & Hodgkinson, V. A. (1990). Faith and philanthropy in America : Exploring the role of religion in America's voluntary sector .SanFrancisco: Jossey-Bass.
- Yen, S. T. (2002). A neconometric analysis of household donations in the USA. *Applied Economics Letters*, *9*(13), 837-841.

Relationship among ‘Secular Giving’, ‘Religious Giving’ and Traditional ‘Mutual-aid Giving’ in Korean Households

Kang, Chulhee* · Pyun, Changhoon** · Oh, JangYong***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us giving & mutual-aid giving and secular giving in Korean households. Data used for this study is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STB) which has been collected at the form of panel data by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Controlling for effects of household factors and financial indicators of households, it showed that religious giving has a substitutive relationship with secular giving in terms of amount of giving and philanthropic effort. Mutual-aid giving h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secular giving in terms of amount of giving, not philanthropic effort. Among control variables, the following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ducation level of householders, house ownership, household income, and amount of other expenditures.

This study contributes to building new knowledge about the relationships among various forms of giving at household level. Particularly, this study makes us understand that the relationships on secular giving can be different in a society with different culture: complementary with mutual aid giving and substitutive with religious giving in Korea. Indeed, it broadens and deepens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among each form of giving. Moreover, this study makes us realize that such analysis can provide significant contextual knowledge for governmental

* Ph. D.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chulheekang@yonsei.ac.kr)

** MSW, Research Assistant,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chulheekang@yonsei.ac.kr)

*** Doctoral Course Studen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jyoh7255@naver.com)

policy interventions on secular giving.

Key Words: Secular Giving, Religious Giving, Mutual-aid Giving, Complementary Relationship, Substitutive Relationship

◆ 2015.04.30. 접수 / 2015.05.28. 1차 수정 / 2015.06.08. 게재 확정